

광주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5279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주식회사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유현필

피 고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욱

변 론 종 결 2024. 3. 22.

판 결 선 고 2024. 5. 24.

주 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9,691,6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4,066,770원, 원고 C에게 6,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2. 5.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피고 D에게 광주지방법원 2022. 5. 18. 접수 제669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 B와 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C와 물품배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이 위 계약에 따라 위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거나 배송하였고, 그로 인한 대금이 원고 A와 사이에 2022. 1. 31.경까지 9,691,600원, 원고 주식회사 B와 사이에 2021. 5. 31.경까지 4,066,770원, 원고 C와 사이에 2022. 2. 15.경까지 6,7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위 각 대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3.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5. 16. 피고 E에게 이를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22. 5. 18. 접수 제66945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피고 D가 1/2 지분을 소유하였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은 2022. 3. 30.경 이미 멸실되었고,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택재개발조합원 자격이 피고 E에게 있다는 것이므로, 위 건물 지분을 피고 D의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순번	적극재산			소극재산	
	항목	가액		채권자	금액
1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매대금	250,000,000원	원고들	20,458,370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5,600,000원		
		가액	184,400,000원		
2	전남 화순군 F 토지	55,000,000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3,550,240원
3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1%	98,000원		광주신용보증재단	60,388,652원
4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18,800,000원		유한회사 G	6,310,300원
5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시가	15,590,000원	H 주식회사	7,496,152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4,300,000원		
		가액	11,290,000원		
6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4,500,000원		I	9,525,510원
7	(차량번호 5 생략) 차량	시가	26,500,000원	J 주식회사	7,456,698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3,271,159원		
		가액	3,228,841원		
8	(차량번호 6 생략) 차량	22,500,000원		광산세무서	10,000,000원
9				서광주세무서	10,000,000원
10				광주지방법원 채무불이행 정보등록	5,379,000원
11				K은행	7,882,000원
12				L카드	557,000원

13			중소기업은행	486,000원
14			M	54,589,947원
15			N	65,000,000원
16			피고 E	70,000,000원
합계		299,816,841원	합계	339,079,869원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22. 6. 10. 당시 피고 D의 채무변제로 인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적극재산			소극재산	
	항목	가액		채권자	금액
1	전남 화순군 F 토지	55,000,000원		원고들	20,458,370원
2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1%	98,000원		광산세무서	10,000,000원
3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18,800,000원		서광주세무서	10,000,000원
4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시가	15,590,000원	광주지방법원 채무불이행 정보등록	5,379,000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4,300,000원		
		가액	11,290,000원		
5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4,500,000원		K은행	7,882,000원
6	(차량번호 5 생략) 차량	시가	26,500,000원	L카드	557,000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3,271,159원		
		가액	3,228,841원		
7	(차량번호 6 생략) 차량	22,500,000원		중소기업은행	486,000원
8				M	54,589,947원
9				N	65,000,000원
합계		115,416,841원		합계	174,352,317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 D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음에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이 더욱 증가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D의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E의 악의는 추정된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다. 피고 E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 E은, 피고 D가 2017년경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할 당시 피고 E이 피고 D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고 E이 O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이루어진 압류 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한 피고 E의 주장 내용에 피고 D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E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E은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정지선

별지